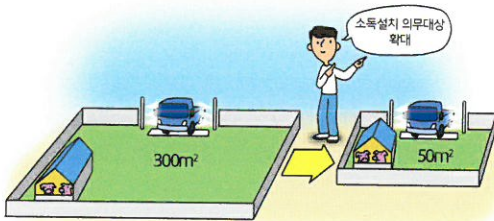
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이 2015년 6월 22일 개정 되었습니다.

개정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은
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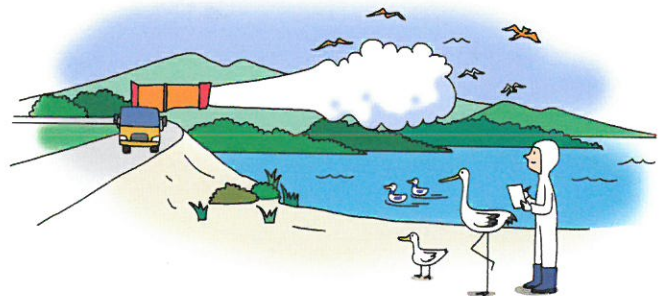


1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



- *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기존 300㎡에서 50㎡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
- * 2017년 2월 23일까지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함

2 “중점방역관리지구” 지정·운영



- * 과거 발생지역 또는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·예찰 및 시설기준 강화

3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우수농가 감액 경감



- *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, 반복 발생, 축산업 미등록·미허가 농가 등에 대한 **보상금 감액기준** 구체화
- *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**보상금 감액 경감기준**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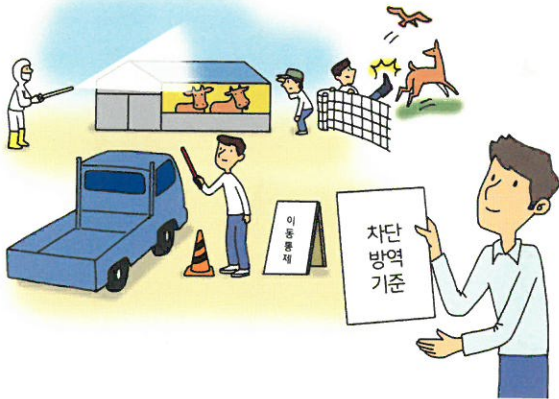
4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



- * 가축전염병 미신고 시 **벌칙**(1천만원→3천만원 이하), 소독시설 미 설치, 백신 미 접종 등 **과태료**(500→1,000만원 이하) **부과기준 상향 조정**



5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



- * 축산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임상관찰·소독·이동통제·야생동물 차단 등에 대한 **방역 기준 마련**
- * 방역기준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
 - 300㎡ 초과 가축사육시설 : 2016년 12월 23일까지
 - 50㎡ 초과~ 300㎡ 이하 가축사육시설 : 2017년 2월 23일 까지

6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부과



- *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**방역 책임 부과** (미 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7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



- * 기존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발생시 역학조사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가축의 출입기록 작성·보존** (대상 가축 외에 식용란 추가)

8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



- * 조사료, 쌀겨, 톱밥, 깔짚 등 운반차량도 **GPS 장착 및 등록 대상에 포함**
- * 신규 대상 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등록해야 함

■ 기타 주요 개정사항

- '가축방역협의회'를 '가축방역심의회'로 개편하고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
- 가축방역관 업무량을 고려한 **적정인력 배치** 근거 마련
-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을 평가하고 **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** 근거 마련
- 이동제한 대상에 감염가축 및 오염차량 외에 원유·사료·알 등 질병전파 우려 **오염물품** 추가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